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일자 : 2016.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위 치 :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시설개요

구 분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14. 3. 22.		2014. 6. 12.	
규모/부지	지상2층/774,38㎡		46,426㎡	
근무인원	5 명		1 명	
주요시설	1층	우주체험관, 4D영상관	캐빈하우스	복층 4동
			방갈로	단층 3동
	2층	우주창의관, 교육체험실	야영데크	14동
			취사장	1동
	옥상	천체관측관	화장실	1동
부대시설			물탱크, 야외공연장, 전기 발전 시설 등	

나. 청소년이용시설 운영 현황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최초위탁 : 2014. 3. 3. ~ 2016. 12. 31.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최초위탁 : 2014. 6. 12. ~ 2016. 12. 31.

다. 위탁사무 및 조건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위탁대상 시설 및 물품 무상사용
 - 운영비는 위·수탁자 협의로 예산범위 내 지원
 - 관람료 등 입장료 거창군 수입 처리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연4회(연8,780천원) 거창군에 납부
 - ※ 입찰가격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위탁기간 : 2017. 1. 1. ~ 2020. 12. 31.일까지 4년간

- 위탁기간 만료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마. 수탁자격 : 경상남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바. 예산지원

- 시설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청소년이용시설을 전문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청소년이용시설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다.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청소년이용시설 위탁운영 계획

2016. 12. 31일자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계획입니다.

□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거창국민여가캠핑장
- 위치 :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운영유형 : 민간위탁운영
- 시설유형 : 청소년이용시설
- 시설규모

구분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14. 3. 22.		2014. 6. 12.	
규모/ 부지	지상2층/774,38m ³		46,426m ³	
근무인원	5명		1명	
주요 시설	1층	우주체험관, 4D영상관	캐빈하우스	복층 4동
			방갈로	단층 3동
	2층	우주창의관, 교육체험실	야영데크	14동
			취사장	1동
	옥상	천체관측관	화장실	1동
부대 시설			물탱크, 야외공연장, 전기발전 시설 등	

※ 청소년이용시설 :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운영조례 제2조 4의 시설

□ 위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최근 3년간 운영 실태**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관람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총방문 인원	체 험 인 원(명)				
			10,218	4D 영상관	가변 중력	평행 감각	월면 건기
계	158,560	49,922	54,319	21,400	15,415	13,614	3,890
2014년	45,330	10,598	17,366	7,328	4,969	3,632	1,437
2015년	49,794	7,606	21,094	8,090	5,863	5,506	1,635
2016년 7월	63,436	31,718	15,859	5,982	4,583	4,476	818

- 수입 및 입금현황

(단위 : 원)

구 분	실입금액(a)	감면액(b)	카드 수수료(c)	총수입 (a+b+c)
계	140,073,800	19,720,950	1,361,739	161,156,489
2014년	53,900,040	0	521,460	54,421,500
2015년	53,154,050	8,338,450	599,500	62,092,000
2016년 7월	33,019,710	11,382,500	240,779	44,642,989

※ 총수입 161백만원은 군 세외수입으로 납부

- 운영비 지원 : 매년 230백만원 중(인건비 54%, 제세 공과금 9%, 프로그램 운영비18%, 기타 관리비 등 18%)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이용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일반	청소년	계	비고
계	8,262	3,542	11,804	
2014년	3,419	1,465	4,884	
2015년	3,505	1,503	5,008	
2016년 7월까지	1,338	574	1,912	

- 수입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약금	차 입	기타수입	계	비고
계	160,848,025	46,692,429	0	207,540,454	
2014년	56,582,460	10,280,150	0	66,862,610	
2015년	66,894,567	21,431,755	0	88,326,322	
2016년 7월까지	37,370,998	14,980,524	0	52,351,52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의거 우리군 세외수입으로 연4회 2,195천원 분기별 납부(연 8,780천원), 나머지 수익금은 거창홍사단 자체수입

□ **민간위탁 운영 성과**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최근 3년간 평균 5만 명 이상 관람하고 있고 관람료 수입도 연 5천만원 이상 거두고 있음.

○ 거창국민여가캠핑장

- 2014년 개장이후 매년 청소년 등 5천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수입도 매년 6 ~ 9천만원을 올리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 활동 등 군민 여가생활에 기여를 하고 있음.

□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운영 방안**

구분	장 점	단 점
계약 갱신	○ 검증된 단체 - 오랜기간 위탁운영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수련원, 캠핑장, 과학관 업무의 연속성 유지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	○ 거창홍사단의 수련원, 과학관, 캠핑장 위탁관리로 타 단체의 시기심 유발
공개 모집	○ 신규단체의 선정기회 부여	○ 업무의 비연속성 ○ 검증되지 않은 단체운영시 문제발생 소지

□ **부서의견**

- 현 수탁자는 오랜 운영경험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었고 월성청소년수련원과 연계관리로 효율적인 운영도모를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추진계획**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년
 - 만료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신청자격 : 법인 및 단체
 - 청소년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 계획 : 계약갱신 또는 공개모집
- 위탁사무 및 조건
 -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관련법규 준수 의무
 - 위탁기간 : 2017. 1. 1 ~ 2020. 12. 31일까지 4년간

□ **향후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위탁운영 접수(계약갱신)/모집공고(공개모집)	2016. 11월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2016. 11월	
협약체결/ 공증	2016. 12월	
수탁자 운영	2016. 1월	

청소년이용시설 수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2016. 10.



위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 청소년이용시설

명 칭	토 지 소 재 지	구 조	층 수	면 적 (m ²)	비 고
월성우주창의과학관	북상면 월성리 1608	일반목	지상 2층	774.38	
거창국민여가캠핑장	북상면 월성리 1608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327.5	
계				1,101.88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위탁 시설 및 장비현황

층별	시설내역	면적(m ²)	내 용	비고
합 계		774.38		
지상 1층 (440)	체험관 “우주체험관”	176.63	가변중력체험, 월면걷기체험 우주에서의 체중변화 우주관련 전시 패널 5종 (우주대폭발,빅뱅 / 태양계의 구성 별과별자리/ 최초의 순간/ 우주개발역사)	
	4D영상관	92.15	30인용, 6축 모션베이스, 4D영상물 3편 1년 6개월 무상제공	
	기계실, 조정실	13.65	4D영상관 조정	
	사무실	16.00	행정사무공간 / 5인	
	홀	63.27	안내데스크, RFID 발권시스템 땅콩의자, 음수대 등	
	화장실	78.30	화장실(22.86), 계단실(27.20) 엘리베이터실(6.24) 방풍실(9.60), 4D영상관 통로(12.40)	
지상 2층 (334.38)	체험관 “우주창의관”	182.81	평형감각적응, 우주걷기, 우주인모형 포토존 등 우주관련 전시 패널 6종 (우주임무완수 / 우주복에 담긴 과학 우주인의 하루 / 임무통제센터와 우주왕 복선 / 우주비행원리 / 국제우주정거장)	
	교육체험실	16.00	체험테이블 6개, 의자 30개	
	홀	79.27	우주인 발급 시스템, 포토존, 음수대 등	
	기타	56.30	화장실(22.86), 계단실(27.20) 엘리베이터실(6.24)	
옥상	천체관측관		슬라이딩 돔, 반사굴절망원경, 태양관측시스템	

- 위탁 물품 현황

연번	품목	규격명	단가 (천원)	수량	금액 (천원)	보관 장소	물품 등록
1	음수기	음수기,케이에스피,KSP-821 CS,냉수2구/초등학생용 430*360*850mm	1,530	2	3,060	1,2층 홀	등록
2	컴퓨터	데스크톱컴퓨터, 삼성전자, CN/DB405S2A-B14G, Intel Core i3 3220(3.3GHz)	750	5	3,750	1층 사무실	등록
3	모니터	액정모니터, 삼성전자, CN/LS19C20KBRSGKR, 48.19cm	260	5	1,300	1층 사무실	등록
4	프린터	레이저프린터, 신도리코 CN/CL8600NH,A3/컬러26 /흑백32ppm	1,298	1	1,298	1층 사무실	등록
5	책상	책상, 퍼스트삼용, FS-112, 1200*700*720mm	133	5	665	1층 사무실	등록
6	이동 서랍	이동형파일서랍, 퍼스트삼용, FSA-030, 420*555*600mm	99	6	594	1층 사무실	미등록
7	의자	작업용의자, 퍼스트삼용, FSBC-AU200, 610*630*1040~1090mm	128	6	768	1층 사무실	등록
8	5단완 도어책장	캐비닛, 퍼스트삼용, FS-184F, 800*415*1882	236	3	708	1층 사무실	등록
9	프린터 테이블	캐비닛, 퍼스트삼용, FS-084D, 800*415*802	137	1	138	1층 사무실	등록
10	수강용 의자	작업용의자, 퍼스트삼용, FSBC-222, 490*510*790mm	54	30	1,620	2층 체험교 육실	미등록
12	책상 유리	1200*700	34	5	170	1층 사무실	미등록
13	수강용 테이블	1500*600*750	110	6	660	2층 체험교 육실	등록
14	고정식 화이트 보드	1200*900	98	2	196	2층 체험교 육실	미등록

○ 거창국민여가캠핑장

- 시설물 목록

구분	수량	면적	용도	비고
캐빈하우스	4동	42.61m ² ×4동=170.44m ²	숙박(복층)	경량목구조
방갈로	3동	31.53m ² ×3동=94.59m ²	숙박(단층)	경량목구조
야영데크	14동	23.04m ² ×14동=322.56m ²	텐트전용	목재
방문자동	1동	53.46m ²	사무실	경량목구조
취사장	1동	67.32m ²	공동취사장 사위장	철근콘크리트조
화장실	1동	87.20m ²	남녀화장실	철근콘크리트조
도로	200m		진입도로	아스콘포장
데크로드	58.5m		캠핑장 내	목재
기타시설	연못2개소, 물탱크1개소, 야외공연장, 전기시설(특 고압 수전 판), 소화시설 등			

- 물품목록

품명	모델(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계	47종	1,030		44,342,000	
TV	UN32F6100AF	8대	700,000	5,600,000	가전제품
컴퓨터	DM300SIA-B12	2대	620,000	1,240,000	“
모니터	LS23C570HAS/KR	2대	285,000	570,000	“
드럼세탁기	19KG	2대	1,300,000	2,600,000	가전제품
냉장고	237리트	8대	415,000	3,320,000	“
밥솥	CRP-HLF1060S	8대	200,000	1,600,000	“
핸디청소기	DWV-908HK	8대	54,000	432,000	“

품명	모델(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업소형청소기	VN9104NNT, AKOR	1대	180,000	180,000	“
선풍기	HF-B14SME	8대	45,000	360,000	“
전기주전자	KO-2701	8대	49,000	392,000	“
방송시설		1식	8,107,000	8,107,000	방송시설
카운터장	2,400*2,400*400	1	2,380,000	2,380,000	부대물품
카운터	900*2,300*600	1	1,350,000	1,350,000	“
TV장	100*430*400	8	470,000	3,760,000	“
창고선반	6면4단, 폭400	2	700,000	1,400,000	“
예약시스템		1식	5,000,000	5,000,000	홈페이지
소화기	3.3Kg	10	20,900	209,000	

관 련 법 규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